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규제의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조정실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규제의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2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재검토기한 변경이 필요한 규제는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며, 재검토 회차가 3회차 이상이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부재한 경우 등 재검토 실익이 없는 규제 및 비규제로 재분류된 조문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56개 시행령상 일부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 또는 변경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규제의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규제의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4제3호를 삭제한다.

제2조(「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5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1. 제11조, 제12조 및 제28조에 따른 규약의 내용, 총회의 개최 및 조합의 의결권 행사: 2017년 1월 1일

제3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3제1항을 삭제한다.

제4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3제11호를 삭제한다.

제6조(「전파법 시행령」의 개정)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7조(「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호를 삭제한다.

제8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2항제5호, 제6호를 삭제한다.

제9조(「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1항제1호, 제8호, 제12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교육공무원임용령」의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12조(「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개정)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3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4조(「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제15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1호를 삭제한다.

제16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의 개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의3을 삭제한다.

제17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의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8제7호를 삭제한다.

제19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5제2호를 삭제한다.

제20조(「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제21조(「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제5호를 삭제한다.

제2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3조의2제6호를 삭제한다.

제23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3호를 삭제한다.

제24조(「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25조(「도시철도법 시행령」의 개정)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27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를 삭제한다.

제30조(「농지법 시행령」의 개정)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1조(「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2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3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제2호를 삭제한다.

제34조(「방송법 시행령」의 개정)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35조(「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의2를 삭제한다.

제36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호를 삭제한다.

제37조(「약사법 시행령」의 개정)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3을 삭제한다.

제38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제4호를 삭제한다.

제39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2호를 삭제한다.

제40조(「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41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5호를 삭제한다.

제42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43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호를 삭제한다.

제44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7호를 삭제한다.

제45조(「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3을 삭제한다.

제46조(「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3제4호 중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의”를 “제72조, 제73조 및 제75조의”로, “신고 및 면제대상과”를 “신고대상과”로 한다.

제47조(「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8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제49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3제2항 중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매 1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로 한다.

제50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1조(「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항만법 시행령」의 개정)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3조(「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8제1호를 삭제한다.

제54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2항제10호 및 제11호를 삭제한다.

제55조(「재해구호법 시행령」의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1호를 삭제한다.

제56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0조제2호를 삭제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7조의4(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7조의4(규제의 재검토)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0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및 연수교육: 2020년 1월 1일	<삭제>
4. (생략)	4. (현행과 같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6조의5(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조의5(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1.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8조에 따른 규약의 내용, 총회의 개최, 우리사주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조합의 의결권 행사: 2017년 1월 1일	1. 제11조, 제12조 및 제28조에 따른 규약의 내용, 총회의 개최 및 조합의 의결권 행사: 2017년 1월 1일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제38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2017년 1월 1일	6. <삭제>
7. (생략)	7. (현행과 같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0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생략)	<u><삭 제></u> ② (현행과 같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5항에 따른 제조위탁이 적용되는 물품 및 지역의 범위 : 2017년 1월 1일 3의2. (생략)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3의2. (현행과 같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의3(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10호 (생략)	제65조의3(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u>11. 제58조에 따른 통계 보고의 종류: 2017년 1월 1일</u>	<u><삭 제></u>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3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 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 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3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현 행과 같음)
1. 제16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의 양도·임대의 승인: 2014년 1월 1일	
2. 제24조에 따른 신고하고 개 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범위: 2014년 1월 1일	<u><삭 제></u>
②~③ (생략)	(현행과 같음)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의3(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의3(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불법감청설비 <u>탐지업의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u>	<u><삭 제></u>
2.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1월 1일	(현행과 같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4. (생략) 5. <u>제36조에 따른 입주승인 취소 후 남은 업무의 처리: 2015년 1월 1일</u> 6. <u>제37조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관한 특례 범위: 2015년 1월 1일</u> ③ (생략)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u><삭 제></u> (현행과 같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공사제한의 예외: 2014년 1월 1일	<삭 제>
2~7. (생 략)	(현행과 같음)
8. 제25조에 따른 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2014년 1월 1일	<삭 제>
9~11. (생 략)	(현행과 같음)
12.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2014년 1월 1일	<삭 제>
13. 제5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2014년 1월 1일	(현행과 같음)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의 시기에 대해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u>	<u><삭 제></u>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른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u><삭 제></u>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제2조의3에 따른 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2016년 1월 1일	1. (현행과 같음)
2. 제2조의4에 따른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폐합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교원 및 교사등의 기준: 2017년 1월 1일	<u><삭 제></u>
3.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학계열 대학의 부속시설 교사 확보 기준: 2017년 1월 1일	3. (현행과 같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규제의 재검토)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2015년 1월 1일 2. 제3조의2에 따른 대부료의 감액 등: 2015년 1월 1일 ② (생략)	제6조(규제의 재검토) ① <u><삭제></u> ② (현행과 같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1. 제9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2014년 1월 1일</u> <u>2. 제13조 및 별표 1에 따른 공장신설 허용업종: 2014년 1월 1일</u>	<u><삭 제></u>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 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 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 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9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1. ~ 5. 삭제	
6. (생략)	6. (현행과 같음)
7. ~ 10. 삭제	
<u>11. 제7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u>	<u><삭제></u>
<u>임의 보장: 2014년 1월 1일</u>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14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1조제4항에 따른 처분제한대상 토지·시설 등을 양도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삭 제></u>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8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 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 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8조(규제의 재검토) ----- ----- ----- ----- ----- -----.
1.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른 정비 <u>계획의 입안대상지역</u>	<u><삭 제></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제84조 및 별표 5에 따른 정 <u>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 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u>	<u><삭 제></u>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의8(규제의 재검토) ① (생략) 1. ~ 6. (생략) 7. 제45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u>2014년 1월 1일</u> 8. (생략)	제47조의8(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1. ~ 6. (생략) 7. <삭제> 8. (생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의5(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5조의5(규제의 재검토)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등: <u>2014년 1월 1일</u>	2. <삭제>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생략) 1. (생략) 2. 제6조의3에 따른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절 차: 2014년 1월 1일 3.. (생략)	제47조의8(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1. (생략) 2. <삭제> 3. (생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 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 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 수: 2014년 1월 1일	5. <삭 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3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3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63조에 따른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삭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0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1. 제15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1. (현행과 같음)
2.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	2. (현행과 같음)
3. 제25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3. <삭 제>
4.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4. (현행과 같음)
5. 제32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5. (현행과 같음)
6.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	6. (현행과 같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5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u>공급: 2014년 1월 1일</u>	3. <삭제>
4. (생략)	4. (현행과 같음)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 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 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 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 업수탁법인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2017년 1월 1일	<삭제>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운송사 업수탁법인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2017년 1월 1일	<삭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u>〈삭 제〉</u>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제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계획 등	<삭 제>
2. 제10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삭 제>
3.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 해제 요건	<삭 제>
4. 삭제	
5. ~ 10. (생략)	5. ~ 10. (현행과 같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 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 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 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규제의 재검토) ----- ----- ----- ----- ----- -----.
1. 삭 제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제4항에 따른 행위신 고시 제출자료	<삭제>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역기 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	<삭제>
6. ~ 9. (생략)	6. ~ 9. (현행과 같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등: 2014년 1월 1일 2. 제14조에 따른 행위허가의 대상 등: 2014년 1월 1일 3.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범위: 2014년 1월 1일	<u><삭 제></u>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7조(규제의 재검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및 지정해지사유: 2017년 1월 1일 2. ~ 5. (생략) ② (생략)	제77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1. <삭제>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 제	1. 삭 제
2. 제1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u>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 2017년 1월 1일</u>	2. <삭 제>
3. 제14조에 따른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평가항목: 2016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평가항목: 2016년 1월 1일
4. 삭 제	4. 삭 제
5. 삭 제	5. 삭 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생략) 1. (생략) 2. 삭제 <2020. 3. 3.> 3. <u>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절차 : 2017년 1월 1일</u> 4. 삭제 <2020. 3. 3.>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u><삭 제></u> 4. (현행과 같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생략)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제15조에 따른 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 2014년 1월 1일	1. 제15조에 따른 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 2014년 1월 1일
1의2. 제22조의2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 말소 절차: 2022년 1월 1일	1의2. 제22조의2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 말소 절차: 2022년 1월 1일
2. 제23조에 따른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 2014년 1월 1일	2.<삭 제>
3. 제23조의2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23조의2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27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의 방법: 2016년 1월 1일	4. 제27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의 방법: 2016년 1월 1일
5. 삭제 <2018. 12. 24.>	5. 삭제 <2018. 12. 24.>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생략)	제6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삭 제></u>
1. <u>제39조에 따른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2015년 1월 1일</u>	
2. <u>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신료의 면제 및 감액: 2015년 1월 1일</u>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1조의2(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절차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1조의2(규제의 재검토) <삭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시기와 방법: 2020년 1월 1일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의2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u><삭 제></u>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 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 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1. ~ 3의2. 생략 4. 제38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 징금 산정기준: 2014년 1월 1 일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1. ~ 3의2. (현행과 같음) 4. <삭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1의2. (생략) 2. <u>제15조의2에 따른 내진설계 기준을 맞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2016년 1월 1일</u> 2의2. ~ 9. (생략)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1의2. (현행과 같음) 2. <u><삭 제></u> 2의2. ~ 9. (현행과 같음)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휴업의 경우 사업전환계획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u><삭 제></u>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u>5.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절차: 2014년 1월 1일</u>	<u><삭 제></u>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2022년 1월 1일 2. 제17조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신청 제한기간: 2022년 1월 1일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 제> 21. 제17조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신청 제한기간: 2022년 1월 1일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생략) <u>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설 폐기물의 종류: 2014년 1월 1일</u> 1의2. ~ 3. (생략)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u><삭제></u> 1의2. ~ 3. (현행과 같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6조의2(규제의 재검토) (생략) 1. ~ 6의2. (생략) 7. 제54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2014년 1월 1일 8. (생략)	제66조의2(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 6의2. (현행과 같음) <u><삭제></u> 8. (현행과 같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48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1. 제12조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2015년 1월 1일</u> <u>2. 제13조에 따른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등: 2015년 1월 1일</u> <u>3. 삭제</u>	<u><삭 제></u>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4조의3(규제의 재검토) (생략)	제84조의3(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 3의2. (생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4. <u>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의</u> 규정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u>신고</u> 및 면제 대상과 이행 또는 설치·개선 명령의 기간 등: 2014년 1월 1일	4. <u>제72조, 제73조 및 제75조의</u> ----- <u>신고대상과</u> -----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생 략) 1. (생 략) 2. 제12조에 따른 실내환경관리 <u>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u> <u>2017년 1월 1일</u> 3. (생 략)	제15조(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삭 제> 1. (현행과 같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생략) 1. ~ 2. (생략) 3. 제6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업의 등록: 2014년 1월 1일	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u><삭제></u>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생략)	제9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4조 및 별표 9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u>2022년 1월 1일</u> 을 기준으로 <u>1년마다</u> (매 1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 ----- ----- <u>2023년 1월 1일</u> ----- <u>3년마다</u> -----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74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u>	<u><삭 제></u>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 -----.
1. 제13조에 따른 행위제한의 예외: 2017년 1월 1일	<삭 제>
2. 제14조에 따른 출입제한의 예외: 2017년 1월 1일	<삭 제>
3. 제15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2017년 1월 1일	<삭 제>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제22조에 따른 토지매수 청구에 따른 매수기한: 2017년 1월 1일	<삭 제>
6. 제27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삭 제>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 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8조 및 별표 5에 따른 설 치 또는 철거 신고 대상 시설 장비: 2020년 1월 1일 2. (생 략)	제95조(규제의 재검토) ----- ----- ----- ----- ----- -----. <u><삭 제></u> 2. (현행과 같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의8(규제의 재검토) (생략) 1. 제1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2. (생략)	제15조의8(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삭제> 2. (현행과 같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9.(생략) 10. 제25조에 따른 유·도선의 운항규칙: 2017년 1월 1일 11. 제26조에 따른 운항약관의 신고방법: 2017년 1월 1일 12. 삭제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9.(현행과 같음) 10. <삭 제> 11. <삭 제> 12. (현행과 같음)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의3(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u>제10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u> 2. (생략) 3. (생략)	제23조의3(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u><삭제></u>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0조(규제의 재검토) (생략) 1. (생략) <u>2. 제8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계약</u>	제140조(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u>2. <삭제></u>

〈의안 소관 부서명〉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	
연락처	(044) 200 - 2442